

2026년도 킨텍스 안전관리자(계약직) 채용공고

2026년 8월 31일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1 채용예정인원

가. 모집 개요

구 분	모집단위(고용형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경력경쟁	안전관리자(계약직)	1명	임용일로부터 23개월

※ 직무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를 참고바라오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근무조건 및 처우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 직급 및 직책 : 3직급 나등급(과장급)
 - 급여 : 연 57,598천원 / 기본연봉 기준
 - 복리후생 : 정규직과 동일 적용(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지원 등)
- ※단, 입사 초 1개월 수습기간 있음

2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하기 서류를 접수기한 내 제출한 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및 개인정보동의서
 - 자격증 사본(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 관련 기업·기관 근무경력 증명서(경력증명서 내 담당업무 및 근무 시작·종료일 기재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관련 근무경력 인정 기준

: 한 사업장 또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총 4년 이상 (단, 근무경력기간 산정은 공고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나. 필기전형

-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필기시험은 1교시 인성검사, 2교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로 실시됩니다.
 - 인성검사(226문항, 30분) : 면접전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NCS(40문항, 60분) 평가항목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면접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평가기준(총점 100점)

구 분	평가영역	배점
역량 및 인성	전문성·업무능력	20점
	지식 활용도·발전 가능성	20점
	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20점
	응용력·창의력·의지력	20점
	예의·품행·성실·인성	20점
합 계		100점

- 평가방식 : 다대다(면접위원 4명) 질의응답형 면접 (1조당 20분 이내)

- 최종합격자는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기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및 예비합격자 산정기준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1순위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필기전형 고득점자
 - 3순위 : 면접전형 점수 중 외부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름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전형 성적에 따른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형은 이전 전형 단계의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전형의 평가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공고개시일 기준 킨텍스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킨텍스 「인사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업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필수자격요건

※ 공고개시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	자격요건
안전관리자(계약직)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 관련 기업 또는 기관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단, 산업안전기사만 인정)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채용공고 게시 및 응시원서 접수	2026. 8. 31.(월) ~ 9. 11.(금)
서류전형	서류적격심사	2026. 9. 14.(월)
필기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필기전형 안내	2026. 9. 15.(화)
	필기시험 (1교시 인성+2교시 NCS)	2026. 9. 19.(토)
면접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026. 9. 29.(화)
	면접시험	2026. 10. 6.(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14.(수)
임용	임용예정일	2026. 11. 1.(일)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일정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1)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사이트(사람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2) 접수기간 : 2026. 8. 31.(월) ~ 9. 11.(금) 16: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6시까지만 접수 가능)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2)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기한 내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서류제출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평가와 무관한 개인정보(연령,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후 등록합니다.
- (4) 증빙서류가 부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5) 향후 최종합격자는 아래 서류를 기관이 통보하는 기한 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적사항 필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1부
- 증명사진(이미지 파일) 1부
- 급여 수령용 통장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 해당공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채용공고(지원서 접수)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1. 업체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자세하게 작성),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모두 명시된 ‘경력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상기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을 기재하고 관인 날인 필수,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한 경력증명서 연락처를 통해 진위여부 검증을 실시하오니 정확히 작성 후 제출
- 근무 기업/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등)로 보완 가능

※ 단, 위 경우 ‘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필요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등 허위작성·제출서류 위변조·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
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
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를 제출(이메일 제출, recruit@kintex.com)하고 기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 발송하며 반환요청이
없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
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
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